선원근로감독 실시 안내

귀사(사업장)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우리청에서는 선원법령, 단체협약,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법령 및 근로 조건의 이행실대를 조사하여 위법, 부당, 불이행 사항을 시정·개선함으로써 선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·향상시키고, 사업장에 대하여 관계법령 준수 및 근로조건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매년 선원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
올해에도 귀 사업장에 대하여 선원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아래 사항에 대하여 사전 점검하여 주시고, 선원근로감독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및 안내 : ☎ 051-609-6351~5

내 용	근 거	처 벌
■ 근로조건의 명시 불이행	선원법 제27조, 제175조	1천만원이하 벌금
■ 전차금(前借金) 상계의 금지	선원법 제31조, 제177조 제2호	5백만원 이하 벌금
■ 선원근로계약 해지 등 제한 ■ 해지의 예고 불이행	선원법 제32조, 제167조 선원법 제33조, 제170조	5년 이하 징역, 5천만원 이하 벌금 2년 이하 징역, 2천만원 이하 벌금
■ 임금체불	선원법 제5조, 근로기준법 제36조 선원법 제52조, 제168조	3년 이하 징역, 3천만원 이하 벌금
■ 퇴직금 미지급	선원법 제55조, 제170조	2년 이하 징역, 2천만원 이하 벌금
■ 임금대장비치 불이행 ■ 근로계약서 등 보존불이행	선원법 제58조, 제179조 선원법 제153조, 제177조	100만원 이하 과태료 5백만원 이하 벌금
■ 유급휴가 미부여	선원법 제69조, 제170조	2년 이하 징역, 2천만원 이하 벌금
■ 재해보상 불이행	선원법 제94조, 제170조	2년 이하 징역, 2천만원 이하 벌금
■ 의료관리자 미숭선	선원법 제85조 제1항~5항, 제173조	1년 이하 징역, 1천만원 이하 벌금
■ 선원관련 보험 미가입(재해보상, 임금채권보장, 송환)	선원법 제40조, 제56조, 제106조, 제173조	1년 이하 징역, 1천만원 이하 벌금
■ 취업규칙 미신고	선원법 제119조, 제177조	5백만원 이하 벌금
■ 선원의 감독기관 등에 대한 신고 -선주의 선내불만처리절차 마련 및 선내 게시의무	선원법 제129조 제1항~제5항	2년이하 징역, 2천만원 이하 벌금 5백만원 이하 과태료

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